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6.

발 의 자 : 이원욱 · 김철민 · 윤미향
김종민 · 양향자 · 홍성국
조웅천 · 오영환 · 양정숙
김영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, 이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.

한편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

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 3제2항 신설).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의 제목 중 “종류와 용도”를 “종류·용도·배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0조제1호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조정교부금의 <u>종류와</u> <u>용도</u>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9조의3(조정교부금의 <u>종류 ·</u> <u>용도 · 배분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 금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「국 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0조제1호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 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 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배분 기 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 다.